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을 산 과 학 기 술 원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과학영재 발굴·육성 전략」(‘23.2.28.)의 후속조치로서,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「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」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,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, 「영재교육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(안 제16조제1항제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울산과학기술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입학자격) ① 법 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3.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「영재교육진흥법」에 따른 영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6조(입학자격) ① 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제16조(입학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, 2. (생략)	1., 2. (생략)
3. <u>고등학교 2학년 수료</u> <u>예정자로서</u>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	3. <u>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</u> <u>또는 「영재교육진흥법」에 따른</u> <u>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</u> <u>영재교육특례자로서</u> ----- ----- -----

※ (부칙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	
연 락 처	(044) 202 - 4832